

근골격계과학기술학회

- 연구 윤리 규정 -

▶ 연구윤리관련규정

01. 윤리적 법적 고려사항

1. 사본은 근골격계과학기술학회에 제출된 것만 고려하므로 어떤 언어로든 부분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
2. 저자들은 그 원고의 과학적인 맥락과 법적인 측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각 저자는 근골격계과학기술학회가 어떠한 보상 청구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3. 다른 곳에서 이미 기재된 그림이나 단락을 포함하고자 하는 저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원고를 제출할 때와 같은 권한이 부여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없는 모든 자료는 저자에게서 작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4. 감사의 말에 실험이 수행된 국가의 현재 법률을 준수했다는 선언을 적어야 한다.
5. 편집자는 상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원고를 거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진술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6. 인간과 동물에 관한 주제를 가진 연구논문 및 사례 연구는 헬싱키선언에 대한 정책 서명을 준수해야 한다. 그것은 환자의 익명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험조사가 사전 동의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한다.
7.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조사가 지침을 모두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저자의 책임이다. 저자는 피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은 피험자는 제외한다.

02. 이해충돌

- 저자는 편견이나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컨설턴트, 제도 등의 기타 관계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이해충돌을 진술해야 한다.
- 이해충돌이 없는 경우 이 또한 충돌이 없었다고 선언되어야 한다.
- 모든 자금의 출처는 승인이 되어야 인정한다.

03. 저작권 양도 및 이중 게재

- 근골격계과학기술학회는 원고 제출 시 당시 모든 저자로부터 저작권이양동의서를 단독으로 배정 받아야 한다.
- 사본은 저작권 이전 진술서 양식을 작성하고 편집실로 전송될 때까지 원고는 동료 검토를 시작하지 아니한다.
- 사본은 본 학술지에만 기재되므로 다른 곳에서도 일부 또는 전체를 출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출판용으로 간주된다.
- 공개 접근을 위해서 인터넷에 게시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사본은 출판되지 아니 한다.

▶ 연구윤리관련규정

01. 연구자의 윤리

°연구자는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본 학술지의 게재를 제한한다.

- ①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위조하는 행위
- ②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변조하는 행위
- ③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자료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가 없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 ④ 저자의 허위기재 :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학회지 또는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
- ⑤ 중복게재 : 표, 그림 및 사진의 제목과 설명은 모두 한글로 표기한다.
- ⑥ 연구자료의 부당 사용 : 사전 승인 및 인가가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 ⑦ 공적 허위진술 :
 - 가) 논문투고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 나)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 수정, 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저자는 원 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다) 다.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행위 및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0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편집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경중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해당논문을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 나)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
 - 다)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 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 마) 경고 및 주의조치

03. 연구부정행위 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세부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성실이 응하여야 한다.

04.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05.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윤리

- ①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편집위원·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 ④ 편집위원·심사위원이 ①, ②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해야 한다.
- ⑤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를 배정하지 아니 한다.